

가. 광주동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제59-102호)

1) 해당헌법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및 2항, 헌법 제41조(장로) 제3항 나호 및 헌법유권해석 39, 헌법 제61조 제2항 다호 1) 및 헌법유권해석 121, 의사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질의: 000씨는 제55년차 회기 00지방회 인사부 회의에서 장로시취 불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00지방회 제55년차 회기 인사부 회의록(2020.02.04. 00교회) 따르면, “00교회 치리목사 000 목사가 청원한 000 씨의 장로 청원 건은 불허하기로 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제56회 000지방회 회의록 p.53 참조). 또한 제56회 00지방회(2020.02.18. 00교회) 통상회의 각부 경과보고 시, 인사부는 위 000 씨의 장로시취 불합격 결의 사실 내용을 “별지 5. pp.52~53”의 내용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제56회 00지방회 회의록 p.18. 참조). 그런데, 000 씨는 현재 00지방회 00교회 시무장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제55년차 회기 인사부 회의, 2020.02.04. 00교회) 인사부에서 해당인의 장로시취 불합격에 대한 일부 항의와 소란으로 인사부 내부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당인의 장로시취 건을 허락한 바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당 교회에서 장로취임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00 씨의 장로 시취와 관련한 본 교단 헌법과 의사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인의 장로 시취는 인사부의 허락 결의와 더불어 해당 결의안이 통상회의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교회 및 지방회의 올바른 행정과 질서를 위해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000 씨는 인사부 회의 결의에서 장로 시취 후보자로 불합격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당인의 장로 시취를 허락했다고는 하나, 인사부 결의 보고에는 해당인의 장로 후보자 시취 불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인은 장로 후보자 시취에 합격한 것입니까? 불합격한 것입니까?

해석: 헌법 제41조 3항 나호와 헌법 제61조 2항 다호를 위배하였으므로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입니다.

질의 2. 000 씨의 장로 후보자 시취에 대한 지방회 인사부 결의는 불허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사부의 해당보고 내용이 지방회 통상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되어 지방회의록에 그 사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000 씨의 장로장립식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해석: 질의 1을 참조하십시오.

질의 3. 000 씨의 장로장립 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절차상 심리부와 인사부 회의에서 허락한 후 장로장립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00 씨는 인사부의 허락 없는 상태에서 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가서 장로장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해석: 질의 1을 참조하십시오.

나. 광주동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59-108호)

1) 해당헌법조항: 헌법 제12조 2항, 헌법 제46조 1항, 2항 나호, 3항, 제48조, 제50조 및 의사규정 제6조 1~4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질의: 00지방회는 00교회의 담임목사가 정년이 되어(2023.01.01.) 00교회 치리목사로 A씨를 치리목사로 파송(2023.01.03.)했습니다. 그런데, 2023.02.21. 정기지방회 시 인사부는 갑작스럽게 00교회 치리목사를 B씨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지방회 의장은 통상회의에서 인사부 모임의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고 인사부 보고(결의)를 공포하지 않고 회무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00교회 치리목사 직무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씨 파송결의와 관련한 인사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한 해당 인사부 모임의 효력 없음과 결의 무효와 더불어 B씨의 00교회 치리목사 무자격 및 B씨의 00교회행정과 관련한 위법적 행위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 정기지방회 당시 00교회 치리목사로 B씨를 파송하는 인사부 모임은 해당 교회 치리목사 교체청원의 이유로 소집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로 치리목사 교체청원서 신청 및 접수 사실은 없었습니다(이는 의사규정 제6조 제1~4항의 위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이 해당청원이 서무부 및 서기에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인사부 모임의 효력 없음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회의기록에서 삭제하라는 회무 진행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지방회 당일 B씨에 대한 00교회 치리목사 파송 관련 회의자체와 결의내용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당 인사부 모임은 지방회 회순을 위반한 위법적인 모임이자 소집목적 및 의제와 상관없는 안건을 다룬 모임으로 그 회의자체 및 결의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당시 인사부는 각부 조직 및 결의보고 순서가 이미 종료되었고, 즉, ‘각부 조직 및 결의 보고 순서’가 종료되고 정회 후 이어 진행된 ‘건의안 및 청원서 접수 처리 회의 순서’ 때, 000교회의 타교파 가입 청원 접수에 따른 관련부서(전도부/심리부/인사부)의 소집과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이는 본래 인사부 소집 목적(타교파 가입 청원 심의)과는 무관하게 00교회 치리목사 B씨 파송을 임의로 추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 의사규정 위반 및 회의 소집 의제와 무관하게 처리한 00교회 치리목사로 B씨로 파송을 결의한 임의의 모임은 인사부 전체 부원에게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의 소집자체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라) 통상회의가 끝나갈 무렵인 기타 토의 시간에 뒤늦게 보고한 인사부의 당회장 및 치리목사 파송 결의는 각부 조직 및 결의사항 회순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자, 의장이 몇 차례 인사부의 해당 모임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인사부의 결의(당회장 및 치리목사 파송) 내용을 처리하지 않고(대의원 허락과 공포가 없음)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 000지방회는 2023.02.21. 이후 현재까지 00교회와 B씨에게 수차례 공문(“000 제59-01호, 45호, 47호, 71호, 79호, 92호, 105호”)과 유권해석 의뢰행정 및 유권해석 하달 내용이 첨부된 공문행정을 통해 A씨가 00교회 치리목사로

행정진행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바) A씨가 제기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00교회 치리목사 효력 없음이 확인(2023카합24 치리목사 불법 파송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하달, 2023.05.19.)된 바 있어, 00교회 치리목사는 A씨임을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관계 및 지방회 행정진행에도 불구하고 B씨와 00교회 관계자(은퇴목사, 장로)는 “지방회 건”이라는 의제로 임시사무총회를 소집(2023.07.23.)하여 2023.08.06. 00교회의 지방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사) 이 임시사무총회에 앞서 00교회 성도에 의해 재기도니 해당 임시사무총회 금지가처분을 신청(2023카합50381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00교회에서 ‘지방회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 결정도 통보(2023.08.04.)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00교회 게시판에 사무총회중지를 공시(2023.08.05.)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B씨와 00교회 일부 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지방회 질서를 바로잡고 지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자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B씨는 00교회 임시사무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2. B씨가 소집한 00교회 임시사무총회 소집 공고와 관련한 00교회의 당회소집 및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회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3. B씨가 소집한 임시사무총회를 00교회 후보에 광고에 실었고, 정년이 되어 00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11시) 시간에 이 사실을 광고한 행위는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4. B씨가 “지방회에 관한 건”을 의제로 임시사무총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지방회에서 해당 임시사무총회 실행의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사합니까? 아닙니까? 임시사무총회를 중지하라는 지방회의 지시를 어긴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5. B씨가 소집한 00교회 임시사무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6. B씨가 소집한 00교회 임시사무총회에서 결의한 지방회 탈퇴 결의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7-1. 헌법 제46조 2항 가~다항에 따르면 정기 사무총회는 일시, 장소와 의제를 대예배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 사무총회는 일시와 장소와 의제를 공고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7-2. 정기 및 임시 사무총회 개최 시 회의 장소에 대한 공고가 빠져있다면 그 회의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7-3. 임시 사무총회 개최 당일 아침에 교회주보와 게시판을 통해 회의장소를 교회(예배당)가 아닌 일반건물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한 후, 사무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7-4. B씨가 2주 전에 소집했던 00교회 임시사무총회를 예배당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지방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8.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지방회에서 파송한 치리목사가 임시 및 정기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해당교회의 지방회 탈퇴를 결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장이 청구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

1) 해당헌법조항: 징계법 제4장 재판에 관한 규정 제14조(재판구분)

2) 질의: 징계법 제14조 재판 구분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2항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라는 규정에 따라 교역자와 교인이 연관된 고소 사건을 본 지방회 재판위원에서 병합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기소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가 교인의 단독 행위로 밝혀진 바, 제1항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지방회에서 재판하고, 장로 및 교역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인의 단독 사건은 하회에서 다루도록 이첩할 수 있는지요?

해석: 이첩할 수 없습니다(재판위원회가 고소장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라. 서울강서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

1) 해당헌법조항: 시행세칙 제8조(교역자의 청빙) 3항(부목사, 교육목사, 임약목사의 청빙) 나호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사임하며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한다.

2) 질의 1: 헌법 제43조 6항 시무정년에서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 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된다. 단, 자원 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 지교회의 예우는 70세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자원 은퇴하는 경우에도 시행세칙 제8조(교역자의 청빙) 3항 나호에 적용이 되는지요? 65세가 되어 자원 은퇴하는 경우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지요?

해석: 자원은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부목사로 부임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는지요?

해석: 청빙할 수 없습니다.